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44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공장시설 신설·증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는 한편, 국가안보 관련 산업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방위산업체의 신주 취득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공유재산 수의계약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 조건을 미준수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외국인투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 조문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분리·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의 정의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추가함(제2조제1항제4호라목 신설).

나. 외국인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한민국법인 또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6조제1항 및 제35조제1호).

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제도가 폐지된 점 등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제9조).

라. 현재 하나의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매각, 수의계약, 임대료 감면 규정을 별개의 조문으로 분리·정비하는 한편, 수의계약으로 토지 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매각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13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마.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대상에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제14조의2제1항).

바. 현재 하나의 조문에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개발·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는 한편, 현재 고시로 정하고 있는 입주 계약 체결·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함(제18조, 제18조의3 신설).

사. 외국인투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국방부차관, 방위사업청장 및 국가정보원 차장을 추가함(제27조 제2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944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법인을"을 "법인 또는 사업자로 등록된 국내기업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을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방법에 따라"를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목 1) 및 2) 중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을 각각 "대한민국 법인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를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서"로 하며, 같은 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 또는 증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의 외국인으로 보며 외국인투자금액은 사용하는 금액에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각각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포함한다)은"을 "포함한다)이"로, "제2조제1항제4호가목2)"를 "제2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기존주식등"을 각각 "주식등"으로 한다.

제9조 중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조세"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 및 매각)"을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유재산의 관리청"을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지방공기업이"를 "지방공기업(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로, "조 및"을 "조,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및"으로, "한다)하거나 매각"을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할"을 "임대받을"로, "같은 항에 따른 수의계약 후에는"을 "임대받은 후에는 임대받은 날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국가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8조 및"을 "제18조제1항 및"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종료되는 때에 이를"을 "끝날 때 그 시설물을"로,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국가등"으로, "따르되, 필요하면 이를 외화로"를 "따르되, 이를 외화로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전단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4조·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13조의3(국유·공유재산의 매각) ① 국가등은 소유하는 토지등을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에 한정하며, 토지등을 취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매각할 때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의4(국유·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① 국가등은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매수한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3조의3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6. 그 밖에 국가등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국가등이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 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으로 다음"으로, "신축"을 "신설·증설, 연구개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전의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업(이하"를 "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사업 또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부품의 사업(이하"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을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의 제목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을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관리) ①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개발·관리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6호 중 "제2조제1항제4호라목"을 "제2조제1항제4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국방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으로, "금융위원회"를 "방위사업청장, 금융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차장

제2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라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중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을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기존주식등"을 "주식등"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1항에"를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로,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제13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3조제2항 본문에"를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및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토지등을 사용·수익 또는 대부받거나 매입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